

#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평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5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0일  
발 의 자 : 김평남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영, 김기대, 김기덕, 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 박기열, 박기재, 박순규, 송도호, 송아량, 양민규, 유 용, 유정희, 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 전석기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(이하 '행안부')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개정으로 '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'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신기술·특허공법 대상 및 범위, 용어 등의 수정을 통해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안부 예규 개정에 의해 특정기술에 해당하는 특정제품과 특정공법 중 특정제품에 대한 선정기능만을 갖게 되어 제명 중 '특정기술'을 '특정제품'으로 변경함.
- 나. 행안부 예규 개정에 맞추어 '특정기술'을 '특정제품'으로 변경함. (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특정제품 심사대상 중 해석상의 혼돈을 해소하고자 재료원가 및 제조·구매금액을 통해 심사대상을 한정함. (안 제3조제1항)

라. 특정제품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현실여건을 반영하여,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. (안 제3조제2항)

마. 특정심사 대상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. (안 제5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8조까지 각각의 조문내용 중 “특정기술”을 “특정제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업체명·모델명·규격·사양·공법·신기술·특허”를 “업체명·모델명·규격·사양”으로 하고, “제품이나 공법”을 “제품”으로, “특정제품·특정공법 등”을 “제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를 “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물품 제조·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·구매 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
제3조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특정제품
2. 천재지변,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”을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선정심사 의뢰)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(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)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·구매에 적합한 <u>특정기술</u>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<u>특정기술</u>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<u>특정기술</u>"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·구매 발주 시 <u>업체명·모델명·규격·사양·공법·신기술·특허</u>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<u>제품이나 공법</u>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<u>특정제품·특정공법</u> 등을 말한다.</p> <p>3. "<u>재료원가</u>"란 동일 <u>특정제품</u>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</p>	<p><u>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특정제품</u>----- ----- <u>특정제품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<u>특정제품</u>"----- -----<u>업체명·모델명·규격·사양</u>----- -----<u>제품</u>----- ----- <u>제품</u>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

금액(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4. "순공사원가"란 공사원가계산서(또는 설계내역서)에 따른 재료비, 노무비, 산출경비의 합계금액(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심사 대상 및 범위)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후단 신설>

1.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

나.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

2. 물품제조·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삭 제>

제3조(심사 대상 및 범위) ①---

--- 특정제품-----  
----.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.

1. -----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2. 물품제조·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·구매금액 합계가 2

가.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·구  
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  
과

나.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·구  
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  
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 
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  
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

2.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  
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  
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  
술

<신 설>

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  
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  
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  
다)이 정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산하  
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·

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
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 
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  
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  
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  
품

2. 천재지변, 재해복구 등 긴  
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  
가능한 경우
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 
“시장”)이 선정심사가 불필요  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삭 제>

제4조(시장의 책무) -----  
-----

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1.~2. (생략)

3. 외부위원: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

가.~사. (생략)

③~⑥ (생략)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.

1. 특정기술 필요여부

2.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

-----특정제품-----  
-----.

제5조(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----

---해당-----

-----특정제품-----

-----특정제품-----

-----특정제품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~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: 특정제품-----

-----

-----

가.~사. (현행과 같음)

③~⑥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-----

-----

-----특정제품-----

-----.

1. 특정제품 -----

2. 특정제품 -----

- 3.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
- 4.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
- 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선정심사 의뢰)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(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)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.

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

- 3. 특정제품 -----
- 4. 특정제품 -----  
-----
-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특정제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선정심사 의뢰)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(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)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.

<삭 제>

있어 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 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조요청 등) 위원회는 제 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협조요청 등) -----  
-----  
-----특정제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